

1. 개정 이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,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·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“국시원”)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, 자격증 발급까지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(안 제26조)

나. 시·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중 “지방자치단체(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28조(업무의 위탁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시·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
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“국시원”)에 위탁한다.

1.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
2.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
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,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(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(중략)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,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(<u>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</u> <u>자를 포함한다</u>), (중략)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(중략) 6.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,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(이하생략) (신 설)	(중략) 6.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,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(이하생략) 제28조(업무의 위탁)①시·도지사 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“국시원”)에 위탁한다. 1.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2.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부칙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-	---